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체계화·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14등급 공관장 직위인 주아세안대표부대사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용령에서 다시 위원을 13명 이내(현행 제37조제1항)로 범주화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의사정족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적 위원을 그간의 운영 관행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명확히 규정

나. 준용규정 현행화

현재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과 실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준

용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준용하는 조문 제목과 일치하여 기재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명시

의사정족수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상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인 7명으로 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37조제3항)

라. 유보 결정 및 소명심사의 근거 명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부적격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의 소명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마.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를 임용령으로 일원화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안 제37조제6항)

바. 위임 근거 명시

임용령에 규율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안 제37조제7항)

사.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 등

“공관장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와 일치시켜 “공관장 자격심사”로 자구 수정 등

아.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 포함

현재 14등급 공관장 직위 중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만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누락되어 있는바, 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 정년초과 근무가능 재외공관 직위에 포함(안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공관장자격심사)”를 “(공관장 자격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관장자격심사”를 각각 “공관장 자격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적격여부”를 “적격 여부”로 한다.

제36조 제2항 후단 중 “부적격자로”를 “부적격으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제2항 중 “②제1항에 따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를 삭제하여 “위원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5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 5인”으로 한다.

제37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운영세칙·심사방식 및 개최시기”는 “공관장 자격심사위

원회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 등을 의결한다.

④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대상자별로 1회에 한하여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의결결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과 유보 의견을 합하여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유보로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⑤부적격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희망할 경우 해당 결정을 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소명 내용이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를 재의결할 수 있다.

⑥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그 밖에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제2호 주요 국제기구 대표부의 “주유엔대표부대사·주오이시디 대표부대사·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대사·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를 “주유엔대표부대사·주오이시디대표부대사·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대사·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주아세안대표부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공관장자격심사)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공관장자격심사 :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자 2. 제2차 공관장자격심사 :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자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자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가 인사평정의 결과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①	-----	공관장 자격심사----- ---. 1. --- 공관장 자격심사 ----- ----- ----- 2. --- 공관장 자격심사 ----- ----- ----- ----- ②-----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 ----- ----- -- 적격 여부----- --. ----- ----- ----- ----- 부적격으로-----.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한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에 재직 중인 5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2. 관계부처 공무원 3인

③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운영세칙·심사방식 및 개최시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제7항 신설>

제37조(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하고,
<삭제>

<삭제>

1. -----

----- <삭제>
----- 5인

2. (현행과 같음)

②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 <삭제>

③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 위원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 등을 의결

한다.

④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대상자별로 1회에 한하여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의결 결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과 유보 의견을 합하여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유보로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⑤부적격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희망할 경우 해당 결정을 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소명 내용이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를 재의결할 수 있다.

⑥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그 밖에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현행과 같음)

[별표 5] (생략)

주요 국제기구 대표부	주유엔대표부대사 · 주오이시디대표부대 사 · 주제네바유엔및 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	---

주요 국제기구 대표부	주유엔대표부대사 · 주오이시디대표부대 사 · 주제네바유엔및 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 <u>주아세안대표 부대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연 락 처	(02) 2100 - 7152